

전주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가단207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환석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블

담당변호사 김민수, 김시온, 박병선, 윤유호

변 론 종 결 2024. 4. 4.

판 결 선 고 2024. 4. 25.

주 문

-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관하여, 피고는 C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우선수익권 중에서 56,000,000원을 D(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양도하고, C 주식회사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 위 적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예 비 적 청 구 취 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관하여, D과 피고 사이에 2021. 8. 12. 체결한 우선수익권 양도계약을 5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C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우선수익권 중에서 56,000,000원을 D(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양도하고, C 주식회사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20. 7. 14. D에게 이자 없이 변제기 2020. 9. 14.로 정하여 D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D이 위 변제기 이후에도 변제를 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22. 1. 7. D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56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2. 6. 15.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2022. 12.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에서 위 지급기일까지 이미 지급한 돈을 뺀 나머지 돈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 다. ’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3) D이 변제기인 2022. 12. 31.까지 변제를 하지 않음에 따라, 2023. 12. 31. 기준 원고의 D에 대한 대여원리금은 5,600만 원[= 5,000만원 + [5,000만원×12%×1(2023. 1. 1. ~ 2023. 12. 31.)]]이

남아 있다.

나. 우선수익권 양도

D은 2021. 8. 12.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C 주식회사에 대한 우선수익권 중에서 426,160,000원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강제집행면탈을 위하여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D의 채권자로서 D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양도된 우선수익권 중 5,600만 원을 D에게 양도하고 C 주식회사에게 위 양도사실 통지를 구한다.

예비적으로,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 실제 양도한 것이라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양도된 우선수익권 중 5,600만 원을 D에게 양도하고 C 주식회사에게 위 양도사실 통지를 구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통정 허위표시 여부

갑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면사무소,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C 주식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F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D과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통정하여 한 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는 D의 배우자이고, D은 이 사건 우선수익권 양도일인 2021. 8. 12. 기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없다.

② 피고는 배우자인 D에게 피고가 소유하던 여러 부동산을 담보하거나 신용 대출을 받아 5억 원 상당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③ 피고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아무런 금융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D 무자력 여부

①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D이 소외 G과 사이에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50702호 사건에서 ‘D은 소외 G에게 83,500,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 받았는바, 이 사건 우선수익권 양도 계약 체결 당시인 2021. 8. 12. 당시 기준 D이 G에게 총 98,393,623원(= 원금 : 83,500,750원 + 이자 : 14,892,873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선수익권 양도 계약으로 인해 무자력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원고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2023. 12. 31. 기준 D의 원고에 대한 채무 5,600만 원 이외에도 상당 금액의 채무가 있고, D의 G에 대한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 아니므로 이를 적극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는바, 우선수익권 양도 계약으로 인해 무자력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한다.

② 판단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참조)

갑 제13, 1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a) D이 소외 G와 사이에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50702호 사건에서 ‘D은 소외 G에게 83,500,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2023. 3. 15. 항소심(제주지방법원 2020나18187)에서 취소되어 24,824,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으로 판결이 변경되었고,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점, D의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제주지방법원 H)은 G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경매절차진행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G에 대한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확정 판결에 따른 채권 원리금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우선수익권에 관하여 원상회복으로 양도된 우선수익권 중 5,600만 원을 D에게 양도하고 C 주식회세에게 위 양도사실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무자력인 D을 대위하여 이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한편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관용

별지